

EU·일본·중국의 식품표시제도

박 길 동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I. EU의 식품 표시 규정

제 1 조

1. 이 식품(foodstuffs)의 영양소표시 관련 지시는 최종소비자에게 영양소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점, 병원, 급식 및 대량 급식 공급을 위하여 공급되는 식품에도 적용 될 것이다.

*Canteens과 기타 유사한 대량급식(mass caterers)은 앞으로 대량급식으로 간주 한다

2. 이 지시는 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 또는 사람이 소비하기 위한 물 그리고 부분적인 식이/보조식품은 적용 받지 않는다.

3. 이 지시는 부분적인 영양소 사용에 대한 식품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에 요약한 1989년 5월 EEC집행부의 표시조항에 침해없이 적용 된다.

4. 이 지시의 목적에 대하여

A. 영양소 표시 : 다음과 같이 관련된 영양소 표시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

(1) 에너지 값

(2) 영양소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소, 소다음
- 비타민과 무기질의 목록 그리고 유효량의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R·D·A(Recommended Daily Allowance, 일일 권장량)

비타민 A	800 IU	비타민 B ₁₂	1 µg
비타민 D	800 IU	비오틴	0.15mg
비타민 E	10 mg	판토텐산	6 mg
비타민 C	60 mg	칼슘	800 mg
티아민	1.4 mg	인	800 mg
리보홀라빈	1.6 mg	철	14 mg
나이아신	18 mg	마그네슘	300 mg
비타민 B ₆	2 mg	아연	15 mg
폴라신	200 µg	요오드	150 µg

15% 규정, 100g 또는 100mℓ, 포장당, 단일 비율을 함유하는 포장의 유효량, 성분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무기질과 비타민의 목록과 일일권장허용량의 변경은 10조의 과정에 따라 적용한다

B. 영양소 강조(Nutrition Claims)

영양소 강조의 의미는 에너지(칼로리값)

를 나타내는 특정 영양성분의 특성을 식품에 적용하여 그상황을 제시, 전달하는 광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 있는 것(provides)
-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나타내는 것
- 있지 않은 것

그리고/또는

- 함유된 것(contains)
 - 증가율이나 감소율이 함유된 것
 - 함유되지 않은 것
- * 영양소량이나 품질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영양소 강조의 구성이 아니다.
- * 아래의 10조 과정에 따라서 이점에서 기술된 조건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만족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C. 단백질의 의미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한 단백질 함량으로서,
단백질 = 총 칼달 질소 × 6.25이다.

D. 탄수화물은 사람에 의해 대사되는 탄수화물을 의미하며 폴리올도 포함한다.

E. 슈가(Sugars)는 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2당류를 포함한다. 그러나 폴리올은 제외한다.

F. 지방(fat)은 인지질을 포함한 총지방을 의미한다.

G. 포화 지방은 이중 결합이 없는 지방산을 의미한다.

H. 단순 불포화 지방의 의미는 cis 이중 결합이 하나있는 지방산을 의미한다.

I. 다중 불포화 지방산의 의미는 cis cis 메칠렌에 이중 결합으로된 지방산을 의미한다.

J. 섬유소는 10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물질로 그 공정에 따라 결정한 분석방법에 의해 측정한 것

K. 평균값 : 계절적 다양성, 소비형태 그리

고 실제값의 다양성으로 인한 기타요인에 의한 식품에 함유하고 있는 최적의 영양소 함량의 값을 의미한다.

제 2 조

1. 2절의 주제는 영양소 표시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일반적인 광고를 제외한 광고의 표현에 있어서 영양소 강조를 표시에 나타내는 경우에 영양소 표시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제 3 조

허용된 영양소 강조는 제1조 (4) A (2)에 목록화된 영양소들과 에너지 그리고 영양소의 범주에 성분 또는 범주에 속하는 물질과 관련된 것에 단지 허용한다.

이 조항에서 영양소 강조의 금지나 제한 조항은 10조 이하의 과정을 적용 받는다.

제 4 조

1. 영양소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 그룹 1과 그룹 2중에서 한가지로 구성된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룹 1 : (a) 에너지값
 (b)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의 함량
그룹 2 : (a) 에너지값
 (b) 단백질, 탄수화물, 슈가(Sugars), 지방, 포화지방, 섬유소, 그리고 소디움의 함량
2. 슈가, 포화지방, 섬유소, 소디움에 대하여 영양소 강조를 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정보는 그룹 2의 구성을 가져야 한다
3. 영양소 표시는 다음의 하나 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 전분
 - 폴리올
 - 단일 불포화 지방

- 다중 불포화 지방
 - 콜레스테롤
 - 부록에 목록화된 무기질, 비타민은 부록에서 정의한 유효량으로 나타내야 한다.
4. 1과 3절에 영양소의 범주에 성분 또는 이에 속하는 물질로 명확한 것은 영양소 강조를 만드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부가해서 다중불포화지방 또는/그리고 단일불포화지방의 함량 또는/그리고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주어지는 경우에 포화지방의 함량을 주어져야 하며 후자가 명확한 것은 이 경우에 2절의 영양소 강조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 ### 제 5 조
1. 에너지값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환표를 사용, 계산해야 한다.

- 탄수화물(폴리올 제외)	4 Kcal/g	17KJ/g
- 폴리올	2.4Kcal/g	10KJ/g
- 단백질	4 Kcal/g	17KJ/g
- 지방	9 Kcal/g	37KJ/g
- 알콜(에탄올)	7 Kcal/g	29KJ/g
- 유기산	3 Kcal/g	13KJ/g
 2. 다음에 관련되는 조항은 아래의 10조의 과정에 따라 적용한다.
 - 1절에 언급한 전환요인의 승인
 - 2절에 영양소의 범주로 간주되는 성분 또는 이에 속하는 물질, 그리고 식품의 에너지 값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1절 목록에 추가
- ### 제 6 조
1. 에너지값 및 그들의 성분 그리고 영양소의 비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치화하고 단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에너지 _____ KJ과 Kcal
 - 단백질, 지방, 소디움, 탄수화물, 섬유소 _____ g
 - 콜레스테롤 _____ mg
 - 비타민과 무기질 — 부록의 표시 단위
 2. 영양소 정보 표시는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나타내야 한다. 부가해서 이 영양소 정보는 표지에 제공량당 또는 비율당, 포장에 함유한 수로 할 수 있다.
 3. 아래의 10조의 과정에 따라서 1과 2절의 영양소정보는 정하여진 기본틀에 따라서 도표의 형태로 결정해야 한다.
 4. 기재량은 식품이 적절한 장소에서 판매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 영양소 정보는 조제된 후에 식품에 관련되어지는 것이며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 식품에 관련된 영양소 정보는 소비자를 위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5. (a)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양소 표시정보는 2절에 특별히 정한 부록에 주어진 일일 허용 권장량(RDA)의 퍼센트로 나타내야 한다.
 - (b)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일일 허용 권장량(RDA)의 퍼센트는 도표형태로 주어져야 하며 이 부절에 적용되는 규정은 10조 아래의 과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6. 슈가(sugars), 폴리올 또는 전분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다음 방법에 따라 탄수화물 함량을 나타낸 바로 다음에 나타내야 한다.
 - 탄수화물 g에서
 - 슈가 g,
 - 폴리올 g,
 - 전분 g,
 7. 지방산의 형태, 콜레스테롤 비율 또는 함량은 다음 방법에 따라서 총지방을 나타낸 바로 다음에 나타내야 한다.
 - 지방 g에서
 - 포화지방 g,
 - 단순 불포화 지방 g,
 - 다중불포화 지방 g,
 - 콜레스테롤 mg

8. 명확한 값은 각개의 경우에 따라서 다음에 근거한 평균값으로 한다.
- (a) 제조자가 분석한 그 식품의 분석값
 - (b) 사용된 배합성분의 알고 있는 실제적 성분의 평균값으로부터 계산
 - (c) 일반적으로 설정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로 부터의 계산값
표시한 값과 공식적인 검사과정에서 설정된 것과의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첫번째 절의 적용에 대한 규정은 10조 아래의 과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1. 이 지시에 의해 포함되는 영양소 표시 정보는 허용 공간이 적합한 경우에 수치가 일직선이 되는 테블러 형태(Tabular form), 허용 공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영양소 정보 표시는 직선형태(Linear form)으로 나타내야 한다.
잘 보이는 곳에 지울 수 없는 특수한 임크로 선명하게 인쇄해야 한다.

2. 이 지시에 의한 영양소 표시 정보는 구매자가 영양소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기타의 측정없이 구매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나타내는 것을 회원국은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한가지 이상의 언어로 영양소 표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예) Tabular form

GROUP 1		“Big 4”
에 너	지	KJ 또는 Kcal
단 백	질	g
탄 수	물	g
지 방		g
GROUP 2		“Big 4”
에 너	지	KJ 또는 Kcal
단 백	질	g
탄 수	물	g
설 탕		g
지 방		g
포 화	지 방	g
섬 유	소	g
소 소	디 움	mg

Linear form

Group 1. 에너지 ○○KJ 또는 ○○Kcal, 단백질 ○○g, 탄수화물 ○○g, 지방 ○○g

Linear form

Group 2. 에너지 ○○KJ 또는 ○○Kcal, 단백질 ○○g, 탄수화물 ○○g, 설탕 ○○g, 지방 ○○g, 포화지방 ○○g, 섬유소 ○○g, 소다음 ○○mg

3. 회원국은 영양소표시에 관련하여 이 지시에 이미 함유된 것보다 더 상세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부터 삼가해야 한다.

제 8 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비포장된 경우 또는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되는 시점에서 포장되는 식품, 대량 음식조달 업자 그리고 즉석판매식품은 제4조에 의한 영양소 표시정보에 한정하고 제10조의 아래 과정에 따라서 공동측정의 적용이 명확 할 때까지 국제적인 조항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전달해야 한다.

제 9 조

공중보건에 효과를 가지는 것과 같은 어떠한 척도도 74/234/EEC(OJ No. 1 136.20.5 1974.)의 결정에서 정한 식품에 대한 과학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 10 조

1. 이 조항 아래의 과정에 따르는 경우에 이 문제는 69/414/EEC 결정에 의해 정해진 식품에 대한 기준위원회에 따라야 한다(이후 위원회라 한다). 이 회의는 의장, 또는 회원국의 대표자의 요구나 발의에 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대표자는 회의 초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은 의장이 그 문제의 위급이 있을 때 제한된 시간내에 그

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의견이 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것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조약의 148(2)의 조항에 있는 중요성에 따라 배포한다. 위원회 내에서의 회원국 대표자의 투표는 그 조항에 있는 고정된 방법에 중점을 두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3. (a)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면 사실을 관찰하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다.
(b) 사실의 관찰이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는 지연없이 관찰된 제안을 상정할 수 있다. 회의는 대다수에 의해 결정한다.
(c) 만약 회의에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회의는 개최되지 않으며 제안된 사실은 위원회에 적용시킬 수 있다.

제 11 조

1. 회원국은 이 지침에 적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실이어야 하며 위원회에 바로 알려야 한다. 이 관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이 지침에 적용되는 제품의 무역은 1992년 4월 1일까지 허용한다.
 - 1993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이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 제품의 무역은 금지한다.
2. 까지는(until)...(이 지침의 통보에 따라 5년), 영양소 표시의 명확화나 영양소 강조에 따른 임의적인 기준, 슈가, 포화지방, 섬유소, 소디움과 같은 영양소에 따른 한계 또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이 영양소를 나타내는 4(1)과 (2)조에 고정한 의무를 개시하지는 않는다.
3. 위원회는...(이 지침을 통보한 후 8년) 이 지침의 적용 보고를 유럽의회와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동시에 인준을 위한 적절한 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 12 조

회원국의 집행부 주소

II. 일본의 영양소 표시제도에 대한 소개

1. 일본의 식품표시에 관련된 주요 법률 개요

- 1) 식품위생법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목적
- 2) 일본농림규격법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의 목적
- 3) 경표법(景表法) : 부당 9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의 목적
- 4) 계량법
- 5) 영양개선법 : 식품영양의 개선을 위한 영양성분표시 목적
 - (1) 영양개선법의 설정 배경
 - 국민의 영양개선 의식의 고조
 - 국민영양상태의 정확한 평가 판단 필요 및 명확화
 - 국민영양을 개선하는 방법의 강구
 - 국민의 건강에 대한 체력유지향상 도모
 - 국민의 복지증진 기여
 - (2) 영양개선법 적용대상 및 표시사항
 - 특수 영양식품 : 영양개선법 12조에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영양성분의 보급에 관한 것을 알리는 표시”를 정하고 있음.
 - 강화 식품 : 특정의 영양성분을 첨가하는 경우에 그 영양소를 보급하는 것을 알리는 표시
 - 특별용도 식품 : 식품 본래 함유된 영양성분을 증감하여 유유아, 유아, 임산부, 병약자 등에 건강상 특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성장 또는 건강을 유지회복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적의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 : 식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보건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에

대한 당해 보건의 목적을 기대하는 것을 알리는 것의 목적에 식품, 즉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식품과 동일한 형태로서 보건의 효과가 있거나 약리·심리적 등 식사로서 만족감을 부여하는 식품

2. 일본의 영양소 표시 규정의 개요

(이 규정은 영양개선법 부분 개정에 대한 소개로 1996년 5월 24일부터 유효하다)

1) 체계 개요

- (1) 판매되는 식품에 영양소의 표시를 할 때
(예; 칼슘 100mg, 저염, 레몬 100g
에 동등한 비타민 C, 저지방)

2) 요구조건

- (1) 기본적인 영양소와 에너지 및 영양 소량의 명확화
* 3 또는 4에 따르는 경우에 “저” “높 은” 것과 같은 용어로 성분의 량을 설명할 때에 이 기준은 후생성이 정하 는 기준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 (2) 특정한 영양소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의 사용인 경우에는 함유하고 있는 성분 함량이 기준량 이상이어야 한다.
예) 칼슘 풍부(Callicium-rich), 비타민 A풍부(Vitamin A-enriched) 등
- (3) 특정한 영양소와 에너지의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의미의 표현을 사 용하는 경우에 함유성분의 기준에 따라 기준량 이하이어야 한다.
예) 저칼로리(Low-calorie), 저지방 (Low-fat) 등

3) 기준규격에 따르지 않을 때에 후생성 의 활동

식품 표시 요구 적용을 통지… 통보를 소 홀히 할 때… 공고(publication)
* 영양소 표시에 대한 광고나 표시상

의 문제가 있는 제품은 월별로 조사 하여 공고한다.

4) 기타

영양소 강화 식품의 표시에 대한 정부의 승인 허용체계는 영양소표시 체계도입에 따 라 폐지한다.

4) 일본에 영양소 표시 기준 규격

(1) 영양소 함량의 명확한 적용
가공식품에 대한 법적인 영양소 표시 요구는 일본어로 쓰여진 영양소의 강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 칼슘, 철분, 포타시움, 인, 마그네 슘, 아연, 구리, 망간, 요드, 셀레늄, 소디움,

비타민 : 비타민 A,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
비타민 B₆, 비타민 B₁₂, 나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folic acid)

(2) 영양소 표지 함량 및 표시

① 영양소 표지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와 영양소 함량을 함유해야 한다.

- A. 에너지, B. 단백질, C. 지방, D. 유 용성 탄수화물, E. 소디움, F. 영양소 강조를 하는 기타 영양소

주 : 유용성탄수화물은 식이섬유소를 제외한 탄수화물로서 정의한다.

- 식이 섬유소 함량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용성 탄수화물 대신에 명확한 함량 을 가지는 탄수화물함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영양소 표지는 일본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기나 포장의 표지는 포장의 개봉없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한 다.

③ ①에 설명한 영양소 함량은 100g, 100ml, 또는 제공량당 또는 조각당의 량으로서 표지에 나타내야 한다.

영양소함량은 주어진 특정한 값이나 또는 상한값 또는 하한값으로 나타내 야 한다.

A. 에너지	킬로칼로리(Kcal)
B. 단백질	그램(g)
C. 지방	그램(g)
D. 유용성탄수화물	그램(g)
E. 칼슘, 철분, 소다움, 주 : 소다움 1,000mg 이상은	그램(g)
F. 비타민 A와 비타민 D 비타민 B ₁ , 비타민 B ₂ , 나이아신, 비타민 C	국제단위(IU) 밀리그램(mg)

- ④ 영양소의 량이 특정한 값일 때 영양소의 분석값은 표지에 나타낸 함량의 범위에 항상 있어야 한다.
- 에너지, 단백질, 지방, 유용성 탄수화물, 소다움 : -20% ~ +20%
 - 비타민A, 비타민D, 칼슘, 철분 : -20% ~ +50%
 - 비타민B₁, 비타민B₂, 나이아신, 비타민C : -20% ~ +80%
- ⑤ 영양소의 량이 상한값과 하한값으로 주어졌을 때 분석값은 주어진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 (3) “공급할 수 있는”(able to replenish)는 영양소 강조의 의미이다.
- ① “높은”(High) 또는 “급원”(source)과 같은 영양소강조를 하였을 때 기준규격의 적용을 받는다. 단백질, 식이섬유소, 칼슘, 철, 비타민A,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D
- ② 영양소 사항 ①에 “높은”(High), “급원”(source)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A. “높은(high)”, 또는 “많은(rich)”것과 같은 영양소를 강조하였을 때 표1의 특별한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 B. “급원”(source) 또는 “함유”(contain)와 같은 영양소함량을 강조하였을 때 표2에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③ 유사한 식품과 비교하여 “높은”(high), 또는 “많은”(rich)것과 같은 영양소 강조를 하였을 때 영양소의 증가량

이 표2의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비교되는 식품을 구분하고 영양소에 증가된 부분이나 량을 나타내야 하며 식품의 증가량은 나타낸 값보다 커야 한다.

(4)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은 영양소 강조의 의미이다.

- ① “무”(free), “저”(low)와 같은 영양소 강조를 하였을 때 기준규격의 적용을 받는다.

에너지, 지방, 포화 지방산, 슈가(폴리올을 제외한 단지 2당류와 단당류), 그리고 소다움

- ② 영양소 또는 에너지사항 ①에서 “무”(free) 또는 “저”(low)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A. “무”(free) “영”(zero), 또는 “없는”(non) 것과 같은 영양소 강조를 하였을 때 표3의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B. “저”(low) 또는 “라이트”(light)와 같은 영양소 강조를 만들었을 때 표4의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③ 유사한 식품과 비교하여 “저”와 같은 영양소 강조 표시를 하였을 때 영양소에 감소된 량이 표4에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비교되는 식품의 구분을 하여야 하고, 영양소의 감소된 부분이나 량을 나타내야 한다.

식품에서 감소된 량은 나타낸 값보다 커야 한다.

“저소다움 간장” 참고는 유사한 간장과 비교하여 감소된 소다움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5) 이 규정은 1996년 5월 24일 부터 시행하게 되며 유예기간은 1998년 5월 31일 까지이다.

〈표 1〉 높은(high), 많은(ricb)의 강조 표시 기준 규격

영양성분명	조 건 (이상의)	
식이섬유소	100g	당 6g(고형분)
	100mℓ	당 3g(액 체)
	100Kcal	당 3g
단백질	100g	당 14g(고형분)
	100mℓ	당 7g(액 체)
	100Kcal	당 7g
칼슘	100g	당 180mg(고형분)
	100mℓ	당 90mg(액 체)
	100Kcal	당 60mg
철	100g	당 3.0mg(고형분)
	100mℓ	당 1.5mg(액 체)
	100Kcal	당 1.0mg
비타민A	100g	당 600IU(고형분)
	100mℓ	당 300IU(액 체)
	100Kcal	당 200IU
비타민B ₁	100g	당 0.30mg(고형분)
	100mℓ	당 0.15mg(액 체)
	100Kcal	당 0.10mg
비타민 B ₂	100g	당 0.42mg(고형분)
	100mℓ	당 0.21mg(액 체)
	100Kcal	당 0.14mg
나이아신	100g	당 5.1mg(고형분)
	100mℓ	당 2.6mg(액 체)
	100Kcal	당 1.7mg
비타민C	100g	당 15mg(고형분)
	100mℓ	당 8mg(액 체)
	100Kcal	당 5mg
비타민D	100g	당 30IU(고형분)
	100mℓ	당 15IU(액 체)
	100Kcal	당 10IU

〈표 2〉 급원(source), 함유(contain)의 강조 표시 기준 규격

영양성분명	조 건 (이상의)	
식이섬유	100g	당 3g(고형분)
	100mℓ	당 1.5g(액 체)
	100Kcal	당 1.5g
단백질	100g	당 7g(고형분)
	100mℓ	당 3.5g(액 체)
	100Kcal	당 3.5g
칼슘	100g	당 90mg(고형분)
	100mℓ	당 50mg(액 체)
	100Kcal	당 30mg
철	100g	당 1.5mg(고형분)
	100mℓ	당 0.8mg(액 체)
	100Kcal	당 0.5mg
비타민A	100g	당 300IU(고형분)
	100mℓ	당 150IU(액 체)
	100Kcal	당 100IU
비타민B ₁	100g	당 0.15mg(고형분)
	100mℓ	당 0.08mg(액 체)
	100Kcal	당 0.05mg
비타민 B ₂	100g	당 0.21mg(고형분)
	100mℓ	당 0.11mg(액 체)
	100Kcal	당 0.07mg
나이아신	100g	당 2.6mg(고형분)
	100mℓ	당 1.3mg(액 체)
	100Kcal	당 0.9mg
비타민C	100g	당 8mg(고형분)
	100mℓ	당 4mg(액 체)
	100Kcal	당 3mg
비타민D	100g	당 15IU(고형분)
	100mℓ	당 8IU(액 체)
	100Kcal	당 5IU

(표 3) 무(free), 영(zero), 없는(non)의 강조 표시 기준 규격

영양성분명	조 전 (이하의)	
에너지	100g	당 5Kcal
	100ml	당 5Kcal
지방	100g	당 0.5g
	100ml	당 0.5g
포화지방산	100g	당 0.1g
	100ml	당 0.1g
슈가	100g	당 0.5g
	100ml	당 0.5g
소다음	100g	당 5mg
	100ml	당 5mg

(표 4) 저(low), 라이트(light), 보다 적은(less), 감소된(reduced), CUT, OFF의 강조표시 기준규격

영양성분명	조 전 (이하의)	
에너지	100g	당 40Kcal(고형분)
	100ml	당 20Kcal(액체)
지방	100g	당 3g(고형분)
	100ml	당 0.5g(액체)
포화지방산	100g	당 1.5g(고형분)
	100ml	당 0.75g(액체)
에너지의 10%		
슈가	100g	당 5g(고형분)
	100ml	당 2.5mg(액체)
소다음	100g	당 120mg
	100ml	당 120mg

* 영양소 표시규정의 개요에 대한 자료는 1996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코덱스 표시분과위원회에 대표로 참석하였던 일본 대표단이 각국의 대표단에게 배포한 자료를 번역한 것이므로 내용에 대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번역자의 견해를 다소 덧붙인 부분이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는 전화 826-2100 교환 236번 박길동에게 문의 바람.

* 다음에는 유럽의 영양소 표시제도에 대한 기준규격을 계재하고자 합니다.

III. 중국의 수출입식품표시 관리규정

(수출입상품검사국 및 외국경제협력 무역국)
1994년 5월 24일 공포

제1조 수출입 식품의 표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과 권리 안전보호와 수출입 식품무역을 원활히 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이하 상품검사법)과 수출입상품검사법 적용을 위한 규정(상품검사법적용규정)을 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식품표지로 간주하는 것은 모든 단어, 그라프, 마크, 표시, 인쇄된 설명서, 판매를 위해 식품의 포장에 부착하는 것, 식품의 품질에 대한 비교정보를 주는 매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수출입식품에 부착하는 식품표시관리에 적용하기 위함이다(수출입식품표시로 간주한다).

제4조 법에 따라 수출입식품의 검사와 감시를 관리수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국은 수출입식품표시의 검사와 등록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수출입식품에 부착하는 식품표시관리와 규정을 공포한다.

제5조 수출입식품 표시의 형태와 식품품질에 관련된 특별한 검사와 등록은 상품검사국에서 수행한다.

제6조 등록증명과 승인번호는 수출입식품 표시를 사용하기 전에 얻어야 한다.

제7조 수입식품 표지는 수입식품과 함께 검사한다. 표시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식품의 판매 허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수출식품표시는 수출식품과 함께 검사해야 한다. 검사의 통과가 안된 표지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수출입 식품 표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검사하고 등록해야 한다.

(1) 수입식품표시는 무역업자와 동의한 요구 조건과 함께 식품의 표시국가 전반의 기준규격 조항에 따라 검사하고 등록되어야 한다.

(2) 수출식품표시는 무역업자의 동의에 따

라서 그 식품의 수입국가가 규정한 규정에 따라서 검사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9조 수출입식품표지의 검사결과는 상품 검사국에 의해 수행되고 수출입식품에 대한 상품검사서류를 만들고 수출입 상품의 세관 봉함표를 교부한다.

제10조 상품검사법 적용규정과 상품검사법에 적절한 조항에 따라서 위반한 사람은 상품검사당국의 처벌활동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1. 거짓, 봉함 또는 식품 표지 등록사용을 비합법적으로 하거나 만들었을 때
2. 이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

제11조 상품검사당국의 처벌규정 결정의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에 제한된 시간내에 재고하기 위하여 상급수준의 상품검사당국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출입상품검사국의 기능으로서 상품검사당국의 권력남용, 친인척에 대한 이권의 부정적인 위반, 증명서 위조, 검사 결과의 허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제한시간내에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품검사법의 적용에 대한 규정과 상품검사법 재고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13조 이 규정의 해석 당국은 수출입상품 검사 주관리국에 부여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유효하다.

수출입식품에 부착하는 식품표시 관리와 검사관리규정

제 1 장 총칙(일반조항)

제1조 이 규정의 구성은 수출입식품 표시관리 규정과 수출입 상품검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제6조에 근거를 한다.

제2조 식품표시는 다음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 (1) 수출입식품의 표시는 상품검사국(이후 수출입 식품표시로 간주)의 수출입상품검사 목록을 포함한다.
- (2) 외국무역계약에 따라 상품검사국이 검사하는 수출입 식품표지 관리규정 및 기타법

제3조 이 규정의 제2조에 목록화된 수출입

식품표시는 등록되어야 하고 검사되어야 한다. 표지가 검사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수출입식품은 판매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등록

제4조 수출입상품검사(이하 등록사무소라 한다)주 관리국에 설립되어있는 수출입상품 표시 등록상담사무실은 식품품질에 관련한 특별한 등록 그리고 수출입식품표시의 형태, 전세계의 인증 문제등 각국을 통한 수출입 식품 표지의 등록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제5조 수입식품표지의 등록에 대한 적용 단위는 식품표지별 차이가 있는 종류에 대하여 식품시료와 표지, 필수적인 기본 자료의 준비와 수입식품 표지등록양식을 기록하여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식품표지의 등록적용단위는 식품표지별 차이가 있는 종류에 대하여 식품시료와 표지, 필수적인 기술자료의 준비와 수출식품표지 등록양식을 기록하여 지역 상품 검사당국에 제출한다.

제7조 상품 검사당국은 수입 또는 수출식품 표지에 식품 품질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제8조 수입 식품표지에 기타 사항과 식품품질에 관련되는 특수 사항에 대하여서는 무역 당사국의 요구조건에 일치하고 적합한지 그리고 주 법의 조항에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수출식품 표지에 기타항목과 식품 품질과 관련된 설명은 무역 당사자 사이에 요구조건에 적합하고 주 규정에 관련되는 것에 적합하고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관련조항의 구성에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사무소는 실험후 수입식품표지에 대한 등록 인증 확인과 수출식품표지에 대한 등록인증서를 발행한다.

제 3 장 검사

제10조 주 수출입 상품검사 당국이 구성한 수출입검사 적용규정에 따라서 검사의 과정을 수행한다.

제11조 검사에 대한 근거

- (1) 식품표지에 대한 국가 일반기준 조항과 무역업자가 요구하는 의견의 일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표지를 검사한다.
- (2)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의해 구성되는 규정과 무역업자가 승인한 의견, 또는 주의 규정에 관련된 것에 따라 수출식품을 검사한다.

제12조 수출입식품의 표지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 품질검사와 비슷하게 수행한다. 첫번째로 사용한 수출입식품의 검사시 상품 검사당국은 품질에 관련된 항목을 검사하며, 후에는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임의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검사의 항목

- (1) 등록된 표지와 수출입식품표지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 (2) 수출입 식품표지에 설명서와 식품자체와 일치하는지를 조사한다.
- (3) 수입 또는 수출식품의 표지가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수출의 국가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14조 검사후의 결정

검사를 통하여 입증되는 것과 같은 요구 조건에 적합한 수출입식품표지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을 하용하지 않는지 상품검사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상품검사 봉인이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공표사항에 서명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제 4 장 부 칙

제15조 상품 검사 당국은 수출입상품검사법과 수출입식품 검사 관련 규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규정에 위반자는 해당 처벌을 받는다.

제16조 상품검사당국의 결정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면 처벌결정을 재고려 할 수 있다.

제17조 수출입 상품검사 주 당국의 기능으로서 권력의 남용이나 친인척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태만으로 제한시간에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의 위증등에

대한 행위는 수출입식품검사법 및 수출입식품검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1994년 8월부터 효력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표시의 일반기준규격

1994년 2월 4일 공포 1995년 2월 1일 시행

1. 주목적 및 적용범위

본 표시규정은 식품표시의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것으로 포장식품에 대한 표시임.

2. 적용되는 관련법

GB2760 식품첨가제 사용에 대한 표시
GB13432 특수영양 식품표시

3. 용어의 정의

3.1 식품의 표시는 포장식품의 문자, 도형, 부호 및 모든 설명서를 포함한다.

3.2 포장식품은 용기에 식품을 넣어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3.3 용기는 식품을 완전 또는 부분을 단위 포장한 것

3.4 식품첨가제는 식품의 색, 향, 맛을 개선,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화학적 합성물질 또는 천연물질

3.5 배합성분은 제조 또는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최종으로 남아있는 물 및 첨가제를 포함한다.

3.6 품질 보존기간(제일 좋은 식용기간)은 표시상의 규정 조건하에서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으로서 식품으로서 완전하여 상품 표시 사항의 규정 품질에 있고 기한이 초과하더라도 현재 일정 시간내에 식품으로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품질의 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식품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3.7 보존기간(예상되는 최종 식용기간) 표시상의 규정 조건하에서 식품을 식용할 수 있는 최종기간으로서 기한이 초과하는 경우에 상품의 품질이 변화하고 이로 인한 식품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의 기간

3.8 고형분(고형 물질)은 식품에 함유하고 있는 고형분과 액상 물질의 혼합부분에서 고체부분으로 가용성 고형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4. 기본 원칙

4.1 식품표시 내용이 부득이 잘못 표시되어 오해나 기만의 내용을 서술하거나 소개하는 식품

4.2 식품표시 내용이 직접·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용어와 도형, 부호로서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적 성질을 혼동할 수 있는 식품

4.3 식품 표시 내용이 국가법률과 규정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하고 상품표시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4 식품표시 내용은 통속적이고 기준규격에 적합하며 과학적이어야 한다.

5. 필수 표시 내용

5.1 식품명칭

5.1.1 식품의 명칭은 질실된 내용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5.1.1.1 국가 표시 기준규격 또는 식품 표시규정 명칭 또는 일반명칭중 1개의 명칭을 선택

5.1.1.2 규정 명칭은 소비자가 오해 또는 혼동되는 상용명칭 또는 속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1.2 “새로운 명칭” “특수명칭” “등록명칭” “상표명칭”의 사용은 5.1.1조 규정중 임의로 한가지 명칭을 반드시 사용한다.

5.1.3 소비자가 식품적인 사실을 혼동하거나 오해할 명칭은 피하고 물리적 상태와 제작방법은 식품명칭 앞이나 뒤에 식품명칭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5.2 배합성분표

5.2.1 식품의 단일 배합 성분은 제외하고 식품 표지상 배합성분표를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

5.2.1.1 배합 성분표의 제목은 “配料” “配料表”라 한다.

5.2.1.2 배합성분의 표시는 배합량의 내림 차순으로 표시한다.

5.2.1.3

5.2.2

5.2.3

5.3 정함량 및 고형물 함량

5.3.1 필수적으로 나타내야하는 용기중

의 식품 정함량은 다음 방식과 같이 표시 설명한다.

- a. 액체 식품 : 용체적
- b. 고체 식품 : 중량
- c. 반고체 식품 : 용량 및 중량

5.3.2 용기중에 함유한 고형분, 액체의 함량은 정량으로 표시하고 고형분 함량은 필수적으로 표시하고 용질량 또는 백분율로 표시한다.

5.3.3 동일 용기에 함유된 독립된 것은 그 수량을 표시한다.

5.4 제조자, 유통업자

식품을 제조, 포장, 소분한 자는 반드시 표시하고 등기법의 단위별로 명칭을 표시한다.

식품의 필수 표시는 원산국, 지구(홍콩, 대만)명 및 국내에 법 등기가 되어 있는 명칭을 표시한다.

5.5 일자 및 기한 표시

5.5.1 생산일자, 품질 유지 기한, 유통기한

5.5.1.1 생산일자 표시 순서는 년월일

5.5.1.2 품질 보존기간 또는 보존기간의 표시에 대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전에 식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는 “…전에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품질보존기간)

“…전에 식용하는 것이 최적이다” 또는 “…전에 섭취하는 것이 최적이다”(품질보존기간)

“…전에 식용” 또는 “…전에 섭취”(보존기간)

b. “품질 보존기한…”

“보존기한…”

c. “품질보존 기한…개월”

“보존기한…개월”

5.5.2 보존 기한, 품질 보존 기한은 저장 조건이 있어야 하고 식품의 저장 방법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5.6 품질등급

상품표시(국가표시와 병행)에 명확한 규정 등급이 있는 식품은 반드시 식품의 등급(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5.7 상품 표시 번호

5.8 특수 표시내용

5.8.1 방사선 조사식품은 “조사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5.8.2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을 배합한 경우 배합성분표에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6. 표시 면제 주 내용

6.1 용기당 표면적이 10㎠이하, 향신료, 식품첨가물은 5.2와 5.5 그리고 5.7 내용은 면제한다.

6.2 상품 표시중 품질 보존기한 또는 보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식품은 품질 보존기한 또는 보존기간이 면제가 된다.

6.3 식품은 원제조자의 명칭과 상품번호를 면제할 수 있다.

7. 임의 표시 주내용

7.1 식품의 생산 또는 단위별 제조 번호

7.2 식용 방법

식용방법을 용기에 기술하고 매일 섭취량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제방법등을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설명서를 추가할 수 있다.

7.3 열량과 영양소

GB 13432 규정의 영양소 함량과 열량을 명확히 표시한다.

8. 기본 요구

8.1 식품표시는 용기·포장에 해야 한다.

8.2 식품표시는 전체내용을 표시한다.

8.3 식품표시는 표시의 내용, 문자, 부호, 도형 배경의 색상등을 포함한다.

8.4 식품 명칭의 표시위치, 식품명의 표시함량은 한눈에 볼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8.5 식품표시의 사용활자는 규정된 활자를 사용해야 한다.

8.5.1

8.5.2 소수민족의 문자사용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8.6 식품표시의 사용단위는 국가법이 정하여 사용되는 단위이어야 한다.

질량단위:g 또는 kg, 또는 혼용할 수 있다.

체적단위:mℓ 또는 ℥, 혹은 혼용할 수 있다.

* 추가 설명

본 표시 참조내용은 FAO/WHO 식품법

규위원회(CAC) codex standard 1991 포장된 식품표시 통용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영양소 식품 표시 규정

GB 13432-92

(1992-04-08 공포. 1993-01-01 시행)

1. 주제 내용에 대한 활용 범위

본 표시 규정은 특수 영양소 식품표시에 대한 기본 내용이다.

본 표시가 적용되는 식품은 포장된 영유아 식품, 영양강화식품, 영양소 조정 식품(저당, 저○○, 저단백 식품)에 표시한다.

2. 적용 표시

GB 7718 식품표시에 통용되는 표시

3. 용 어

3.1 특수영양소 식품

천연영양소의 보통식품에 영양소 함량을 특수인에게 영양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만든 식품

3.2 영양소

식품구성의 성분 물질로서 원래 함유한 것으로 정상 대상인이 통상 섭취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광물질, 섬유소 등 5개의 영양소를 말한다.

3.3 기타 용어

GB 7712 제3.1~3.8 동조항에 따름

4. 기본원칙

특수 영양 식품표시에서 GB 7718 제4장에서 제외 사항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4.1 필수 표시로서 품질 보증 기간내에서 에너지값과 영양소함량을 표시한다.

4.2 표시에서 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1 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의 작용 표시

4.2.2 “늙지 않음” “장수함” “백발흑변” “치아개생” “항암” 또는 기타 유사 용어

4.2.3 “조상전래 비방” “자양식품” “아

름답고 건강한 식품” “궁정 식품” 또는 기타 유사용어

4.2.4 식품명칭 앞뒤에 물질의 명칭 또는 도형, 약효의 암시 명칭, 보건 기타 유사작용 표시

5. 표시의 기본 내용

5.1 식품 명칭

5.1.1 GB 7718 제5조 규정 표시명의 식품 명칭

5.1.2 GB 7718 제3.1조 규정 식품에 부합하는 식품명칭의 표시명, 식용대상을 표시

5.2 배합성분(配料表)

5.2.1 GB 7718 제5.2조 규정 표시 배합성분표

5.2.2 강조하는 원료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는 백분율(질량백분율 또는 체적 백분율)

5.3 열량

부록A에 표시한 특수영양소 식품 열량

5.4 영양소

부록 A에 표시한 특수영양식품중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소, 무기질, 미량원소 함량

5.5 정합량 및 고형물 함량

GB 7718 제5.3조 규정을 나나태는 함량 및 고형물 함량

5.6 제조자 및 유통업자 명칭 및 주소

GB 7718 제5.4조 규정에 적용되는 제조자 및 유통업자

5.7 제조 번호

GB 7718 제7.1조 규정에 나타내는 번호

5.8 일자 표시 및 저장 방법

GB 7718 제5.5조 규정에 의한 생산일자, 품질 보존기일, 저장 방법 등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이하의 내용

5.8.1 특수영양식품은 포장후 영양소 또는 관능적 품질, 저장조건을 측면에 부착

5.8.2 특수영양식품은 포장후 포장용기 내에 저장이 불가능 할 때에 측면에 소비자가 주의를 요하는 주지의 내용을 표시

5.9 식용 방법

GB 7718 제7.2조 규정 표시

5.10 질량 등급

GB 7718 5.6조 규정에 표시한 질량 등급

5.11 상품 표시 번호

상품 국가 표시, 회사 표시번호

6. 기본 요구

GB 7718 제8장 규정에 반드시 부합

* 주용기 최대표면적이 적은 10cm²는 5.2, 5.7, 5.9, 5.11조 내용은 면제

A.1 열량

A.1.1 식품의 특수영양소 열량은 100g 당 또는 100mg당으로 표시하고 식용 정량중의 열량으로 한다.

A.1.2 열량은 KJ 표시하거나 KJ 상당의 Kcal로 표시한다.

A.1.3 열량 계산

탄수화물 17KJ/g (4Kcal상당/g)

단백질 17KJ/g (4Kcal상당/g)

지방 38KJ/g (9Kcal상당/g)

알콜 29KJ/g (7Kcal상당/g)

유기산 13KJ/g (3Kcal상당/g)

A.2 영양소

A.2.1 단백질

A.2.1.1 특수영양식품 100g 당 또는 100ml당의 단백질 함량(g) 또는 1회 섭취에 적당한 량에서의 함량(g)

A.2.1.2 단백질량의 계산

단백질량=킬달분석측정법에의한 총 질소량 × 6.25

이 식중 6.25는 일반 환산계수, 해당식품에서 나타내는 분석방법에 따른 환산 계수

A.2.2. 지방

특수영양식품 100g 당 또는 100ml당의 지방 함량, 또는 1회 섭취에 적당한 량에서의 함량(g)

A.2.3. 탄수화물

A.2.3.1. 특수영양식품 100g 당 또는 100ml당의 탄수화물함량(g), 1회 섭취에 적당한 량에서의 함량(g)

A.2.3.2. 탄수화물 유형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00g 또는 100ml당 함유한 탄수화물 ○○g
그중 ○○당 ○○g

A.2.4 섬유소

특수영양식품 중 섬유소함량당(mg 또는 μg 또는 국제 단위)은 100g 당 또는 100ml당

으로 표시하고 1회 섭취에 적당한 량에 함유한 상당 함량(mg 또는 μ g)

“부가 설명”

본 표시는 전국 식품 공업 표시 추진화 기술위원회에서 제출하여 경공업부, 상업

부, 의업부, 국가 상협국, 무생부, 중국표시 추진화 최신 연구공동조성 기준 소조에서 초안한 것임.

본 표시를 참고로 채용한 것은 FAO/WHO 식품규격위원회 (CAC 146-1985) 포장특수 용도식품 표시 설명서